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00

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최수진·한지아·신성범

유용원 • 박정하 • 구자근

김소희 · 김예지 · 성일종

이상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%,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를 감면해주고 있으나,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최근 초저출산·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.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,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필요가 있음.

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,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(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6제1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5조의6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제85조의6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) ① 「사회적기업 육 의 감면) ① -----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202 <u>5년 12월 31일</u>까지 사회적기업 0년 12월 31일-----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(인증을 받은 날부 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(2) -----

재활법」 제22조의4제1항에 따 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 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인 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 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③ ~ ⑧ (생 략)

| <u>2030년 12월 31일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|